
오픈뱅킹공동업무 추진 현황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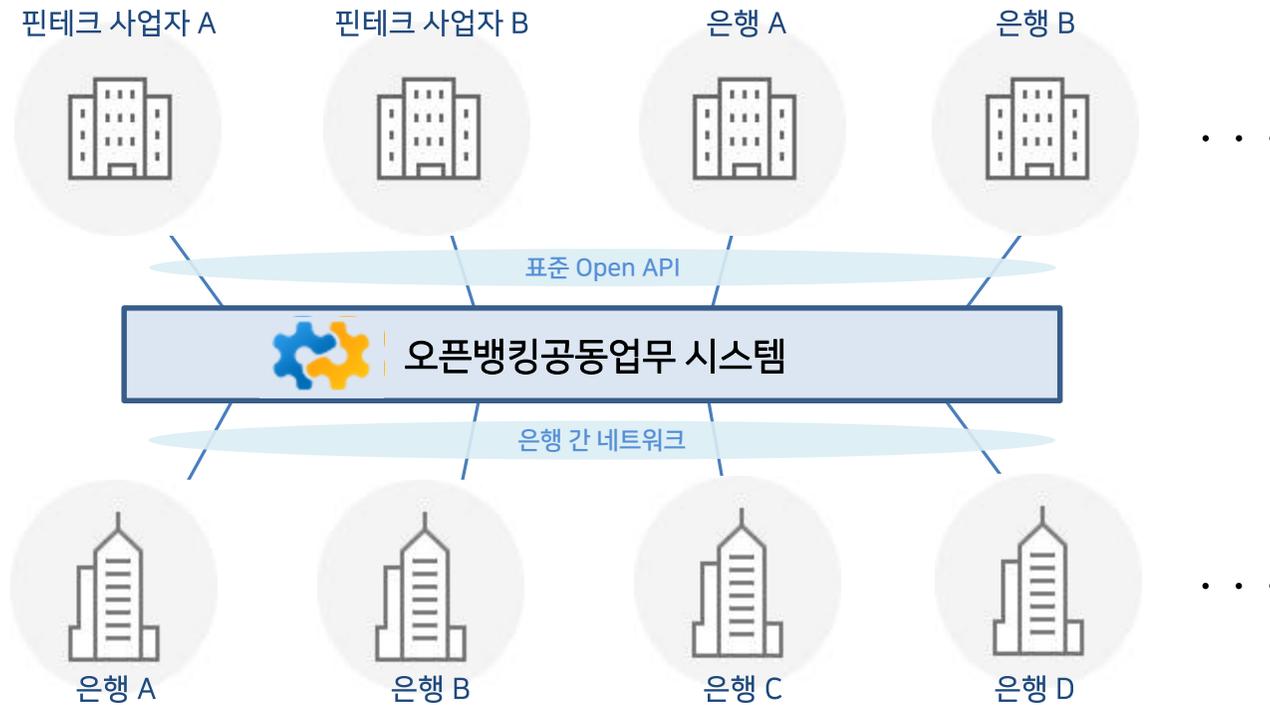
I . 오픈뱅킹공동업무 개요

II . 세부 이용절차

I . 오픈뱅킹공동업무 개요

1. 오픈뱅킹공동업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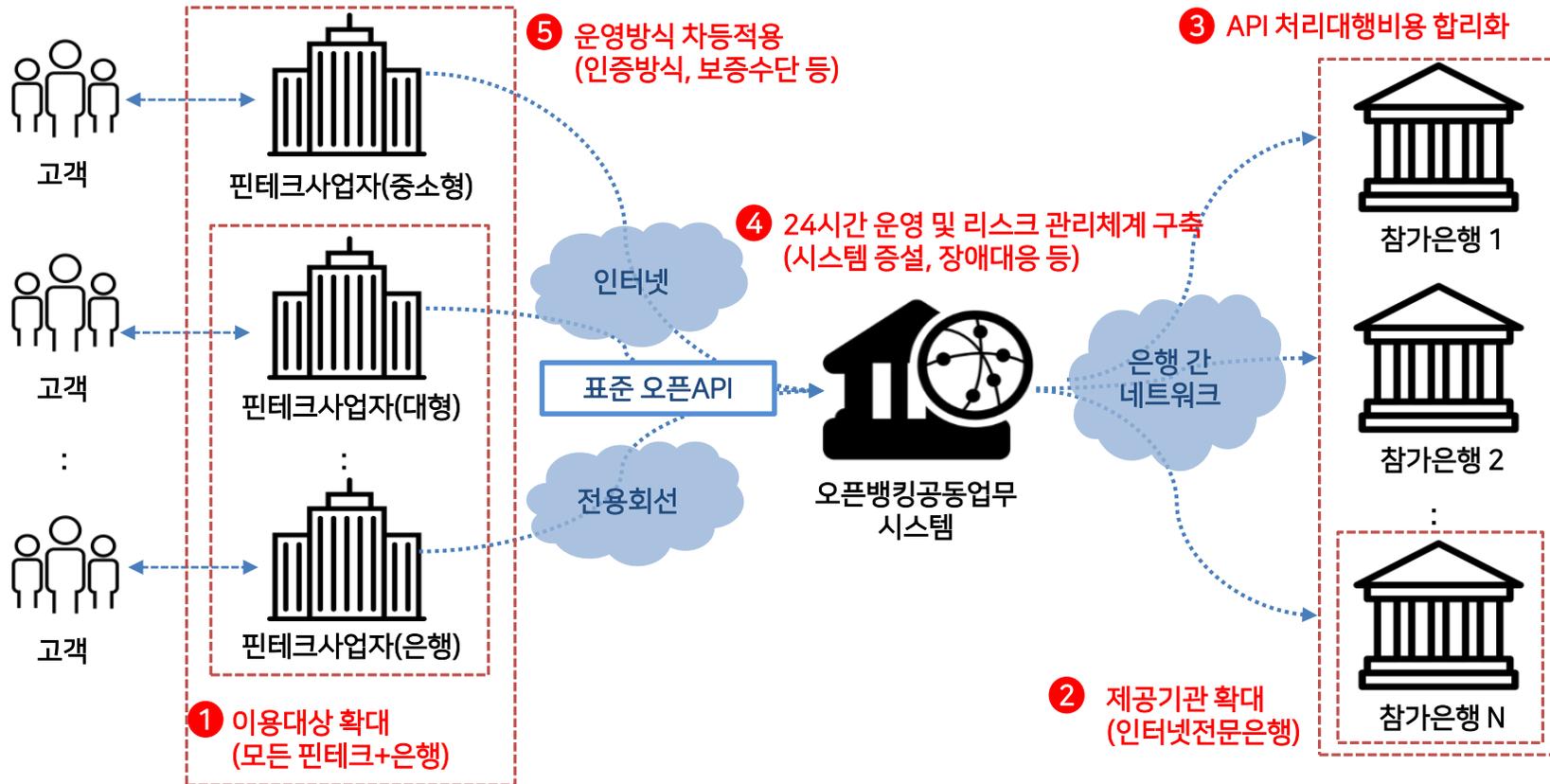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의 개방형 인프라**



오픈뱅킹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참가은행(18개) 접속 효과

2. 주요 사항

개념도(TO-BE)



3. 제공서비스 및 제공기관

• 제공서비스

구분		설명
조회	잔액조회	고객이 이용기관의 제공서비스를 통하여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이용기관이 고객 계좌의 정상여부 및 성명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송금인정보조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의무이행을 위하여 송금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이체	입금이체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
	출금이체	출금에 동의한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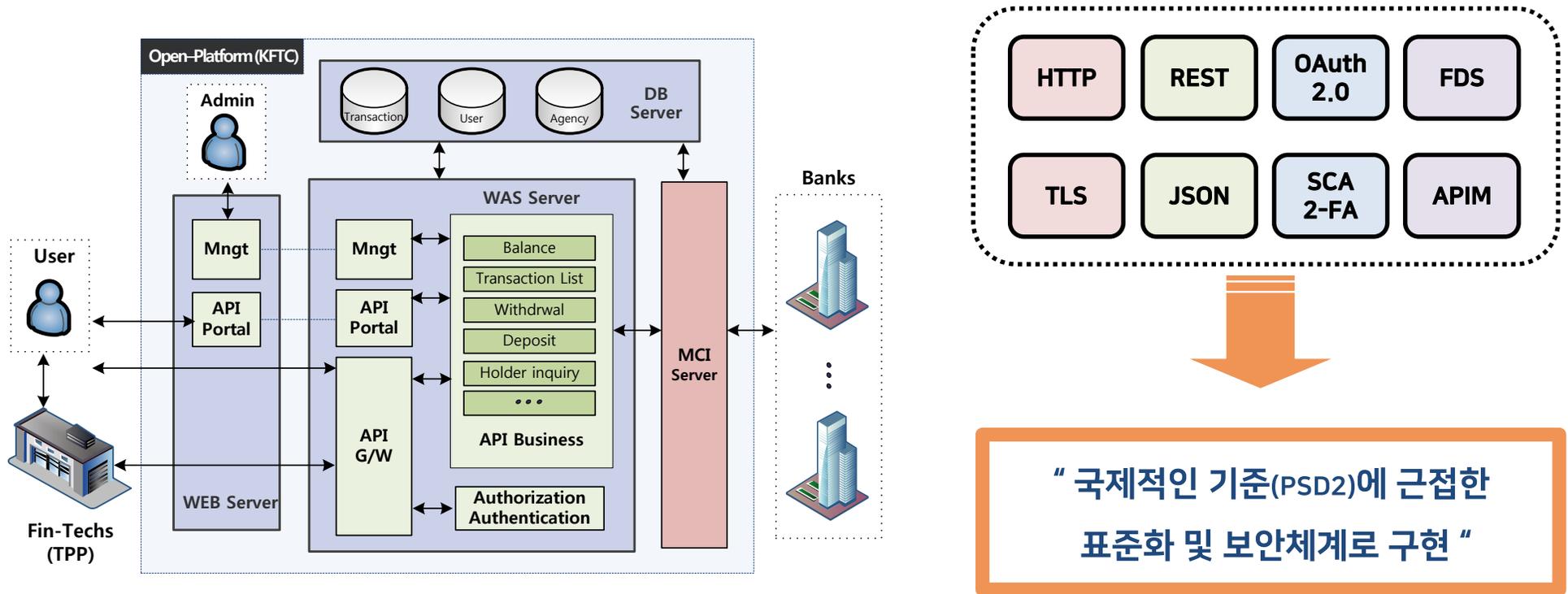
• 제공기관

- 현행 일반은행(16개)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까지 확대

※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농협중앙회 등) 추가 참여 추진예정

4. 시스템 구성 및 기술기반

☑ 참가은행 공동의 **통합 중계센터형**으로 구축하여 오픈뱅킹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금융결제원이 수행



II . 세부 이용절차

1.1. 이용 절차



- ① 이용승인 :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운영기관 담당자가 관련 승인 규정에 따라 이용(제외)대상 여부, 사업모델의 적정성 등 적합여부 확인 후 승인
- ② 기능테스트 : 운영기관 담당자가 핀테크 서비스의 단위기능이 정상 동작하는 지 기능테스트 수행
- ③ 보안점검 : 지정된 보안점검기관을 통해 보안성 강화를 위한 이용기관 보안점검 및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 수행
- ④ 계약체결 : 주거래은행 선정, 수수료 책정, 이용한도 설정, 보증수단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기관과 이용기관 간 계약체결
- ⑤ 서비스 실시 : 운영기관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서비스 실시

1.2. 이용기관별 차등 운영

[차등 운영 기준(예시)]

사업자 재무 규모(자본금 20억 이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

평가항목 심사기준 상 일정점수 이상 획득

<대형>

- 자체인증 허용 및 '실계좌 기반' API 제공
- 출금은행과 보증수단 자율 협의
- 책임소재 명확화

충족?

Yes

No

A형

B형

<중소형>

- 운영기관 대행인증(현행 동일) 및 '핀테크이용번호' 기반 API 제공
- 운영기관에 보증보험증권 제출

※ (예시) 평가항목 심사기준 : 재무건전성(기업신용등급, 납입자본금, 회사업력, 영업이익 등)

리스크 관리(AML시스템 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가입)

2.1. 이용승인 절차

① **(이용신청)** 이용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

— 관련서류 제출(이용신청서, 서비스 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② **(이용적합성 심사)** 운영기관 담당자가 「이용기관 승인기준」을 토대로 심사

—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서비스 계획서 검토 등 심사 진행



③ **(이용적합성 승인)** 담당자는 이용적합성 승인결과를 신청사업자에 통지

— 신청한 사업자에 후속 절차(기능테스트 및 보안점검 등)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

2.2. 이용기관 승인 기준(이용 대상)

- 은행 또는 핀테크¹⁾ 사업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²⁾
 -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 오픈뱅킹 운영기관(금융결제원) 인정 기업

이용대상

1) 정보통신기술 또는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또는 기여가 예상되는) 금융관련 업무('18.11.27, 금융위원회)

2)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은행 혁신성 평가 매뉴얼' 참고)

업종명	내용	업종명	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보안프로그램, OS, DBMS개발 등	자료 처리업	자료입력, 전환처리 등
응용S/W 개발 및 공급업	회계용 S/W, CRM, ERP개발 등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 서비스업	온라인포털, 정보제공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홈페이지, 맞춤형 S/W개발 등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학습, 증권정보제공 등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통합, SI업체 등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외국환, 어음교환 등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 컴퓨터장애복구 등		

2.3. 이용기관 승인기준(제외대상 및 제외서비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 게임머니·아이템(중개) 또는 가상화폐³⁾ 관련 사업모델 기업
- 다단계 판매, 상조회사, 대부업
- 미풍양속 저해,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 이용기관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모델 상 필요자격 미달기업
- 영업 행태에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의심되는 기업
- 기타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 등

제외대상

- 출금대행⁴⁾
- 납부서비스⁵⁾

제외서비스

주3) 가상화폐 발행(ICO 포함) 또는 거래소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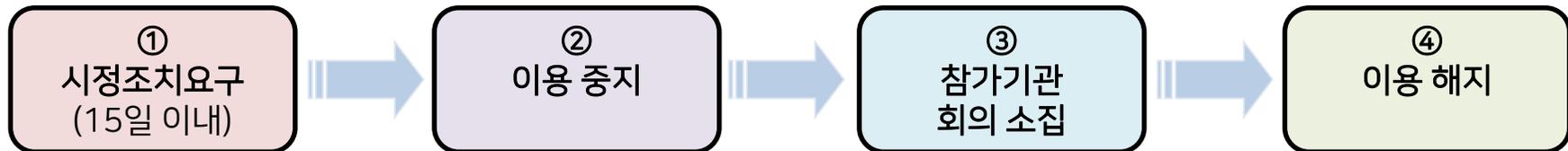
4)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수취인을 통해 전달받아 제3자가 출금을 대행하거나 동 권리를 재판매하는 경우

5) 수납하려는 주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예약)하는 경우

2.4. 이용중지 및 해지

· 이용기관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용 중지 또는 해지 가능 (예시)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내용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출금한 경우
- 이용기관 수수료 미납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이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하위가맹점 포함)
- 이용 제외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
- 참가은행으로부터 해지요청이 있거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등



3.1. 기능테스트 절차

① **(서비스 개발)**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도구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

— API 명세서, 개발가이드와 샘플소스 등을 활용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



② **(자체테스트)** 시뮬레이터를 통해 단위기능에 대하여 충분한 자체 테스트 수행



③ **(기능테스트)** 센터 담당자가 신청사업자의 핀테크 서비스 기능을 최종 테스트

— 신청한 사업자가 제출한 기능테스트 신청서에 따라 정상동작 여부 최종확인

3.2. 오픈뱅킹공동업무 Open API (REST방식)

(예시)

기능구분	API명	URI	HTTP Method
OAuth 인증 및 계좌관리 기능	사용자로그인연결	https://openapi.open-banking.or.kr/oauth/2.0/authorize	GET
	AccessToken획득	https://openapi.open-banking.or.kr/oauth/2.0/token	POST
	등록계좌 확인	https://openapi.open-banking.or.kr/oauth/2.0/authorize_account	GET
	사용자정보조회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user/me	GET
	사용자로그인연결 동의해제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user/unlink	POST
	등록계좌조회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account/list	GET
	계좌정보변경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account/update_info	POST
	계좌해지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account/cancel	POST
조회기능 (사용자)	잔액조회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account/balance	GET
	거래내역조회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account/transaction_list	GET
이체기능	출금이체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transfer/withdraw	POST
	입금이체(핀테크이용번호)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transfer/deposit	POST
	입금이체(계좌번호)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transfer/deposit2	POST
	이체결과조회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transfer/result	POST
	이체API처리조회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transfer/recheck	POST
조회기능 (이용기관)	계좌실명조회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inquiry/real_name	POST
	송금인정보조회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inquiry/remit_list	GET
관리 API	참가기관 상태조회	https://openapi.open-banking.or.kr/v1.0/bank/status	GET

※ 업무요건에 따라 추후 API 추가 또는 변경 예정

4.1. 보안점검

구분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	이용기관 보안점검
개요	개발한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이용기관의 운영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점검
수행내용	중요정보 노출여부, 금융거래 정보 위변조 방지 여부 등 점검	이용기관 운영환경 전반(시스템, 설비, 인력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점검

- **취약점 점검 및 이용기관 점검 대체방안 (예시)**

-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안점검 항목별 충족여부 점검 결과자료 제출로 대체 검토

- **운영 초기 이용기관 보안점검 유예방안 (예시)**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업무실시 초기 점검수요 집중 등을 감안하여 **이용기관 점검을 유예**하되, 서비스 실시 **1년 내 점검 의무화** 검토('20년 상반기까지 이용신청한 경우로 한정)

4.2. 보안점검 절차

① (점검기관 안내 및 신청) 보안점검에 대해 운영기관에서 관련절차 안내 및 이용기관의 점검신청

— 보안점검기관과 점검시기 협의, 점검신청서 작성 및 발송, 제출물 전달 등



② (점검수행) 신청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 또는 보안관리체계 점검수행

— 신청사업자에 제출물 설명(보완)요청, 보안취약점 또는 이용기관 점검 수행



③ (결과확인 및 피드백) 점검결과 통지 및 후속조치 수행

— 점검기관은 신청사업자와 운영기관에 점검결과 통지

— 운영기관은 신청한 사업자에 미흡부분 보완요청 및 이후 절차 안내

5.1. 계약 절차

① (주거래은행 협의) 신청사업자는 주거래은행 선정 후 수수료 책정 요청 및 서류제출



② (수수료 확정) 주거래은행과 신청사업자 간 최종 수수료 확정



③ (서류검토 및 계약준비) 제출서류 검토, 이용한도 및 보증수단 설정 등 계약 준비



④ (계약체결) 신청사업자와 운영기관 간 최종 계약체결

5.2. 이용기관 수수료

이용기관 수수료

=

처리대행비용(고정)

+

주거래은행 수수료(자율)

- **처리대행비용** :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한 주거래은행이 오픈뱅킹 처리대가로 상대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고정비용**
- 이용시작 **첫 월부터 경감비용**을 부과하고, 해당 API의 경감기준을 **3개월 연속초과**할 경우 기본비용 부과
 - * 단, 경감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용기관은 첫 월부터 기본비용 부과 예정

<오픈뱅킹 처리대행비용 조정안(이체 API 기준) >

구분	현행 비용	기본비용(대형)	경감비용(중소형)	경감기준	
				거래금액(월)	거래건수(월)
출금이체 API	500원	50원	30원	100억원	10만건
입금이체 API	400원	40원	20원	"	"

* 은행권 실무협의 사항으로 최종수준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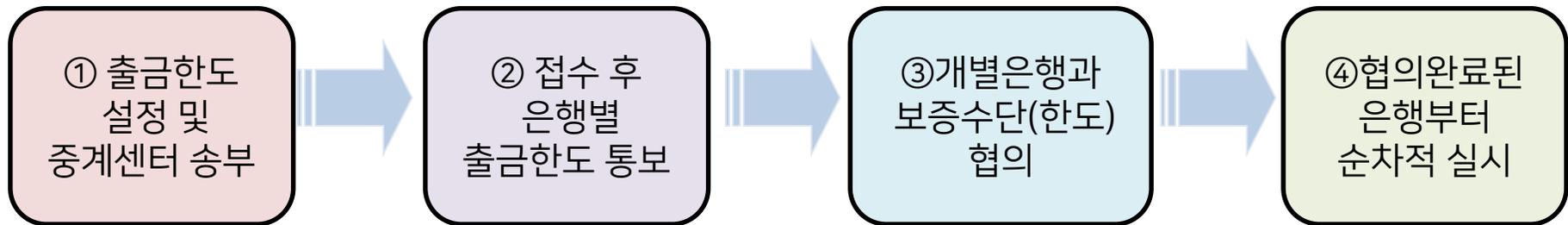
- **주거래은행 수수료** : 이용기관과 주거래은행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 참가은행(18개) 중 하나를 주거래은행으로 선정 가능(핀테크사업자 계좌 관리은행)

5.3. 보증수단

• 대형 사업자

- 이용기관이 일정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준을 충족한 경우, 출금은행과 보증수단 자율협의 허용
- 개별은행 협의절차(예시)



• 중소형 사업자

- 운영기관을 통하여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 징구
- 기본 보증한도는 200%로 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보증한도 가감산(최저한도 100%)
- 감산(-) 기준 : 재무건전성(기업신용등급, 매출액), 사업안전성(회사업력, 서비스 기간) 등
- 가산(+) 기준 : 보안기준(서비스 취약점 미흡항목, 계좌소유인증 적용여부) 등

6.1. 기타 사항(1)

- 계약관리 방식

- 은행권 공동 사업 취지에 따라 이용기관과 운영기관(금융결제원) 간 단일계약 방식
- 이용기관 당 하나의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되, 해당 은행 내 다수 약정계좌 운용가능(최대 50개)

- 결제모듈 재판매

- 결제모듈을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사업자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대한 허용하되,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관점에서 하위가맹점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 (운영기관에 정기적으로 하위가맹점 관리내역 신고의무 부여 등)

- 자금세탁방지(AML)

-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사항을 동 시스템 내 이체기능에 반영하여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소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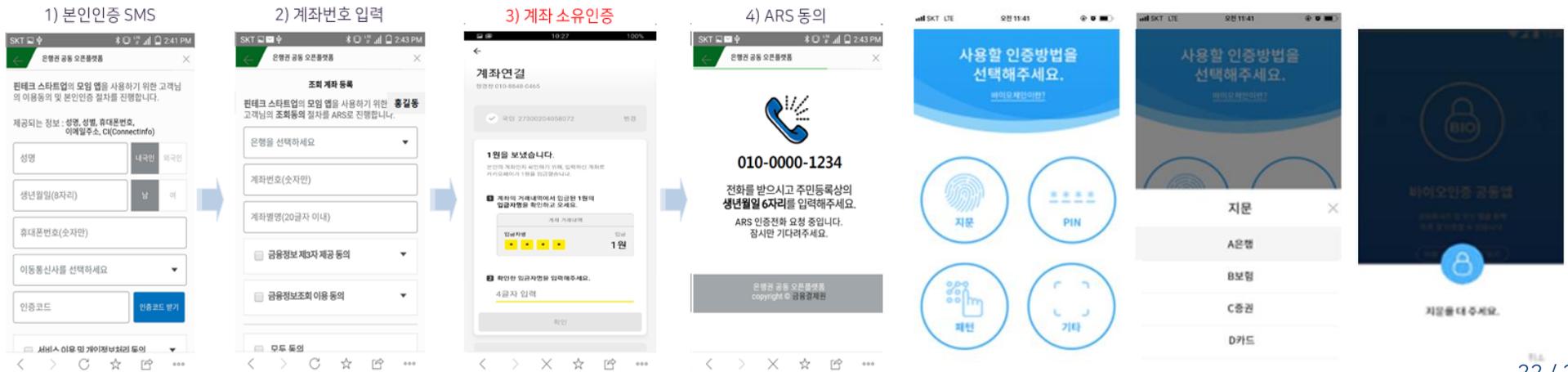
6.2. 기타 사항(2)

• 접속회선

- OpenAPI 기본 취지에 따라 오픈뱅킹 시스템 접속 시 **인터넷회선** 사용 원칙

• 다양한 운영기관 대행인증 및 동의방식 제공

- 중소형 사업자를 위한 **운영기관의 대행인증 및 동의방식, 인증수수료 체계** 등을 다양화하여 해당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사용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예) 고객인증 : SMS인증, 1원이체 인증, 바이오인증 등
추심동의 : ARS녹취, 클라우드 기반 공인인증서 등



6.3. 기타 사항(3)

- **다양한 신규 API 제공**

- **실 계좌기반 API** : 대형사업자 대상의 실 계좌번호 기반 API (잔액, 거래내역, 출금이체 등)
- **수수료 조회 API** : 이용한 API의 수수료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API
- **통계 조회 API** : 일별 서비스별 이용건수 및 금액, 출금한도 등을 조회할 수 있는 API
- **사용자 탈퇴 API** : 고객의 탈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API 등

- **출금동의자료 간소화 검토** (기존 펌뱅킹 고객의 오픈뱅킹 전환 시)

- **고객 편의성 관점에서 출금동의자료 간소화 방안**에 대해 협의 중
: 기존 출금동의자료(ARS녹취 등)를 **확인서*(템플릿)**로 간소화하여 제출하는 방안 등
* 필수정보(이용기관명, 은행, 계좌번호 등)와 동의문을 포함한 이미지 또는 텍스트 파일
- 단, 전환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의 동의자료는 **기존 출금동의자료 제출절차 준용**
- 출금동의자료의 중계기관 제출 시에는 **인터넷망 기반의 파일송수신 프로토콜 활용 예정**

7. 향후 일정

- 연내 은행권 시범실시와 핀테크 사업자 본격실시를 위해 사전 준비작업을 빠르게 진행

- 참여자간 세부 전산설계요건 등 확정(~6월 말)
- 이용대상 기관 앞 사전 이용신청서 접수(7월~, 별도 안내 예정)
 - * 초기 이용신청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내 실시를 원할 경우 9월까지 신청 필요
- 사전 이용신청 기관 대상 보안성 점검 진행(본격실시 전 2~3개월 소요 예상)
- 이용대상 기관과의 표준 약관/계약서 등 제정(~10월)
- 제공대상 기관 확대 시행(~10월)
- 시범서비스 실시(10월~, 은행권 부터)
- 본격서비스 실시(12월~, 참여희망 이용대상 기관)

“감사합니다”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
미래금융실 핀테크업무팀
testbed@kftc.or.kr